

2020. 4. 20

금융

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Comment

은행/지주

Analyst **은경완**
02. 6454-4870
kw.eun@meritz.co.kr

보험/증권

Analyst **김고은**
02. 6454-4871
goenkim@meritz.co.kr

금융당국,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

금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.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/유동성/영업 규제 등을 완화해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.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으로 금융업권의 자금 공급 여력이 206~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. 향후 경기 상황을 고려해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갈 예정이며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.

[은행] 유동성 리스크 및 단기 주요 지표 악화 부담 완화

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정책 지원으로 유동성 리스크 및 은행권 단기 주요 지표 악화 부담은 크게 완화. 1) 예대율/LCR(유동성커버리지비율) 한시적 완화, 미수이자 인식 등은 마진 관리에 긍정적이며, 2)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 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 조기 도입, 증시안정펀드 출자액 위험가중치 하향조정(300% →100%), 지방은행 D-SIB(시스템적 중요은행) 제외 등은 자본비율 유지에 도움. 또한 3)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전성 부담도 경감. 단,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.

[증권]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되어 구NCR 부담 완화

9월 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(부동산 관련 법인 제외)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(최대 2년)까지 위험값 산정 기준을 완화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위험값 0~32%에서 0~16%로, 일반 증권사의 경우 위험값 100%(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)에서 거래상대방별 신용 위험값에 따라 0~32%로 하향 조정. 중소/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위험값 100%에서 0~32%로 하향 조정. 만기 도래 분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채취득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구NCR 부담이 있던 대형증권사에 긍정적이라고 판단. 다만, 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향후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 대두될 수 있음.

[보험] 대면 채널 모집 시 전화 모집 절차(비대면 녹취방식) 허용

현행 보험업 법령 대면 채널 모집 시 설계사가 계약자를 최소 1회 이상 대면 하도록 규정(설명의무 이행,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 등)하고 있으나 이를 비대면 녹취 방식 등으로 허용. 신계약 판매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전망.

표1 2020.4.16 금융규제 유연화 세부 방안별 조치 필요사항 및 적용 기한				
	업권	세부방안	조치 필요사항	적용 기한
가. 자본 적정성 규제	공통	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	(은행) 법령해석(4월) (보험·증권)시행세칙 개정(4월)	-
	은행	「바젤Ⅲ 최종안」 조기 시행	시행세칙 개정(4월)	-
	은행	D-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	감독규정·세칙 개정(6월)	-
	은행	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시행연기	-	-
	증권	중투자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	시행세칙 개정(4월)	~'20.9월 신규 취급 대출
		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	금투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(4월)	~'20.9월 신규취급대출채권
		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	금투업규정 개정(6월)	-
지주	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	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(5월)	-	
나. 유동성 규제	은행	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	금융위 의결(4.16)	~'20.9월
		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	금융위 의결(4.16)	~'20.9월
	은행	예대출 한시적 적용 유예	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		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	감독규정 개정(5월)	~'20.12월 신규 취급 대출
	산은	NSFR 한시적 적용 유예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	보험	채안·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	법령해석 발급 (4월)	-
	보험	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	-	~'20.9월
	여전저축	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	저축상호	예대출 한시적 적용 유예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	다. 자산 건전성 규제	공통	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	법령해석 발급(4월)
여전		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	감독규정 개정(5월)	-
라. 면책 등	공통	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	검사및제재규정 개정(4.16)	-
	공통	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-
	보험	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-
	여전	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	감독규정 개정(7월)	-
	저축	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	정책금융	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	경영실적평가지침 개정(4월)	-

자료: 금융위, 금감원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